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53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 김 현 · 노종면 · 박해철

김우영 · 조인철 · 최민희

박지원 • 이정헌 • 한민수

윤건영 • 민형배 • 박민규

황정아 · 이훈기 · 김영환

양부남 • 정동영 • 김 윤

이광희 • 이재강 • 이병진

이해민 · 장종태 · 정진욱

임미애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9명을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1명, 교육부장관이 1명, 교육 관련 단체에서 1

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 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이사회는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3조제2항 중 "9명으로"를 "11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사람 5명
- 2.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 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1명
 - 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 1명
-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 공사는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 3. 추천 이유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사장

- 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이사회의 이사와 공사의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사장ㆍ이사"를 "이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u>방송통신위원회 위</u>	②제13조에 따른 이사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u>를 받아</u> 임명한다.	
③ 감사는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③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④ 부사장은 사장이 <u>임명한다</u> .	④임명하되 <u>,</u>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신 설></u>	⑤ 이사회는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
	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 ③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
	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u>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
	<u>2.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① (현행과 같음)
 - -----11명으 로----.
-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한 사람 5명
- 2.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명
 - 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추천 1명 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추천 1

<신 설>

④·⑤ (생 략)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단</u>서 신설>

명

-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
 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
 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
 명
-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1 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하고, 공사는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 <u>3. 추천 이유</u>
-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 7 -----
- -----. <u>다만,</u>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신 설>

<신 설>

⑦ ~ ⑨ (생 략)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 12. (생략)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 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 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 우 사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 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 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 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 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 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사회가 정한다.